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공원녹지과-22219
등록일자	2015.8.21.
결재일자	2015.8.2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공원기획팀장	공원녹지과장	도시환경국장	부구청장 직위대리	구청장
이정용	강성두	한정훈	배경섭	주윤중	08/21 신연희
협조자	재무과장 김병희				

## 한티근린공원 내 경찰사육대 점용허가 신청건 검토보고



2015. 8. .

강 남 구  
(공 원 녹 지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b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, 「동법 시행령」 제22조 제23조,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3조 • 「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」 (국토해양부 훈령 제863호, 2012.8.10) •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0조
<b>추진 경위</b>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⇒ 수서경찰서 경무과-6855(2015.08.17.)호
<b>예산 사항</b>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<b>수혜자 및 범위</b>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지역주민 및 일반시민 등
<b>분야 별 검토사항</b> (계속 : 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O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O ) 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<b>타 기관 사 례</b>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<b>전문가 자 문</b>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# 한티근린공원 내 경찰지구대 점용허가 신청건 검토보고

수서경찰서로 부터 우리구 한티근린공원 내 공공청사(대치지구대)를 건립코자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립니다.

## 1 점용허가 신청개요

- 신청자 : 수서경찰서(장)
- 점용위치 : 강남구 대치동 598번지 일대(한티근린공원 내)
- 신청면적 : 총 448.36㎡
  - 지구대 부지점용(공원) : 400㎡[197.97㎡(건물) + 202.03㎡(주차, 진입로 등)]
  - 기타 부대점용(보도) : 48.3㎡[29.22㎡(공사용) + 19.14㎡(차량진출입)]
- 점용목적 : 공공청사(대치지구대) 1동 건립
- 점용기간 : 허가일 ~ 2018.8.31.(3년)

### < 대치지구대 신축공사 개요 >

- 공사기간 : 2015. 9월 ~ 2016. 2월
- 규모
  - 건축면적 : 197.97㎡ (연면적 429.92㎡)
  - 층수 및 구조 : 지상3층 / 철근콘크리트조
- 사업비 : 705백만원(국비)
- 층별용도 : 1층 ⇨ 민원실, 문서고, 조사실,  
2,3층⇨ 회의실, 식당, 탈의실, 휴게실, 화장실 등



## 2 주요 추진경위

- 2015.5.21.~6.30 :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(개정) 입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635호)
- 2015.8.11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시행
  - [기정] 파출소만 가능(연면적 116㎡미만) ⇒ [개정] 지구대 추가(연면적 430㎡미만)
- 2015. 8.17 :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(수서경찰서 → 강남구) - 지구대 건립

### 3

## 검토결과

⇒ 적 정

관 련 법 규		검토결과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	제24조(도시공원의 점용허가)	적 정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	제22조(점용허가 대상) 제5호 제23조(점용허가 기준) 제2호[별표1]	적 정 (건축연면적 430㎡만의 지구대 설치가능)
「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」 (국토부훈령제863호, '12.8.10.)		적 정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	제13조(점용허가기간) 제1항	적 정 (3년내 가능)
	제20조(요금감면) 제3항 4호	적 정 (공익가능, 공공용건축물)

### 4

## 점용허가 처리계획

#### □ 점용허가 내역

##### ○ 세부내용

공원명	위 치	공원면적(㎡)	점용면적(㎡)	허가기간
한 티 근린공원	대치동 598번지 일대	총19,200	400 (건축연면적 429.92㎡)	허가일~ 2018.8.19. (3년 이내)

※ 신청면적 448.36㎡ 중 도로변(삼성로) 보도(48.36㎡) 점용은 관리부서(건설관리과 등) 별도 협의사항으로 제외

##### ○ 점 용 료 : 면제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0조(요금의 감면) 제3항

#### □ 지장물 처리

##### ○ 수 목 : 총 18종 156주

- 청단풍 등 10종 140주 (교목 15주, 관목 125주) ⇒ 별도 장소지정 이식

⇨ 공원 나대지 등 지정장소에 이식 조치

- 왕벚나무 등 6종 14주 (교목 14주) ⇒ 제거조치

⇨ 수목밀식과 울폐되어 발생한 고사목, 피압목, 생육불량 등 조경수로서 재활용(관상)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수목과 이식시 고사 우려되는 대형목

- 오동나무 등 2종 2주 (교목 2주) ⇒ 수형조절(가지치기)

⇨ 경사면부 저축 수목 중 대경목(R35~R40)은 가지치기(수형조절)후 존치

○ 시설물 : 13종

- 재사용 가능시설 : 등의자, 볼라드, 안내판, 트렌치덮개 등 8종

⇒ 필요한 곳에 이설 또는 보관후 공원보수 등에 재활용

- 재사용 불가시설(노후) : 평의자, 정자, 콘크리트블럭 등 5종

⇒ 철거후 폐기처리(정자시설은 대체 휴게시설 확보토록 조건부여)



〈위치도(한티근린공원)〉



〈공원전경(점용신청지)〉

※ 세부내역 : 별첨

□ 원상복구 계획

○ 기존 공원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점용허가부지(400㎡) 내 건축계획에 따라 복구 정비토록 하고,

○ 향후 점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지구대 설치목적이 해소된 경우는 즉시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토록 조건부여

5

처리의견

□ 본 신청건은 대치동 지역 일대의 치안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, 관계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공공성과 시급성을 감안 불임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점용허가 처리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

- 불 임
1.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.
  2. 점용허가 조건 1부.
  3. 지장물 조사 저축 수목 및 시설물 내역(처리계획) 1부.
  4. 점용허가면적 산출서 1부.
  5. 건축계획 도면(별첨) 1부. 끝.